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11, 의안번호 1143)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및**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의안번호 1111, 1143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이병도 의원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1111)**

(1) 제 안 자 : 이병도 의원(찬성의원 10명)

(2) 제 안 일 : 2019. 10. 16.

(3) 회 부 일 : 2019. 10. 22.

**나.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1143)**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2) 제 안 일 : 2019. 10. 16.

(3) 회 부 일 : 2019. 10.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병도 의원 제출 일부개정조례안(1111)**

(1) 제안이유

- 장년층과 노인은 기준 연령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상이하고 현행 조례상에 있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효율적인 장년층 인생이모작 정책 및 지원사업에 바람직하지 않음.
-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대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 9조제2항 삭제)

## 나. 서울특별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1143)

###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이병도 의원 제출 일부개정조례안(1111)

- (1)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3)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나. 서울특별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1143)

-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등
- (2) 예산 조치 : 협의완료
- (3) 기 타 :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나) 입법예고(2018.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이병도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11은 장년층과 노인의 기준 연령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도 다름에도 현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규칙을 삭제하고,
  - 장년층에게 적절한 정책 및 사업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조례에 장년층인생이모작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임 .
-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안 의안번호 1143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 2 주요사항 검토

#### 가. 이병도위원의 안

##### 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제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p>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① ----- -----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 -----.</p>
--	---

-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이하 “시설”이라 한다’라는 단순히 자구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개정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짐.

나. 위원회 설치(안 제9조)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현재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년층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시에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음.
-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회의가 2013년 1회 개최된 후 열린 적이 없으며, 장년층과 노인에 대한 정책 지원은 생애주기별로 욕구가 서로 다르므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자문기구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나. 서울특별시시장 안 -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안 제2조항)**

현행	개정안
부칙 < 제7110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 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7110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 2020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부칙 제2조)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 소상공인의 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현재 '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었으나 감면유효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서울시의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경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임.
- 또한 제로페이 결제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50플러스 캠퍼스와 50플러스 센터에서의 이용이 전무한 것은 개정안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함.

### 〈복지정책실 소관 제로페이 실적〉

(단위: 천원, 2019.10월말 기준)

담당실국 (부서명)	사업명	할인 실적 현황				
		기관명	할인종류	할인비율	할인 건수	할인총액
어르신복지과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승회원, 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5%	598건	11,065
장애인 복지정책과	보조기기센터 운영	서북보조기기센터	이용료	10%	15건	25,040
50플러스캠퍼 스 및 센터	할인 실적 현황 없음.					

### 3 종합 의견

- 이병도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111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노인과 장년층의 연령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정책이나 지원사업이 다름에 따라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장년층 정책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안임.



- 현행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인생이모작정책 및 사업의 자문을 대행하는 것보다 장년층 인생이모작 정책의 전문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이하 “시설”이라 한다’라는 단순 자구 삭제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자구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개정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안 제6조제1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4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사업시행 이후 결제가 없는 점 등 그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 감면은 실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과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4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로페이 이용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1**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 내용**

**□ 현황**

- 제로페이 적용 가능 시설 : 2,756개

\* 서울시 : 393개 시설(직영 164개, 투자출연기관 70개, 민간위탁 159개)

(단위 : 개)

구분	계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차시설	기타
계	393	38	87	20	71	5	134	38
시직영	164	9	68	6	57	-	6	18
민간 위탁	159	27	17	13	14	5	67	16
투자 기관	66	2	2	-	-	-	60	2
출연 기관	4	-	-	1	-	-	1	2

\* 자치구 : 2,363개 시설(구별 평균 94개소)

**※ 추진 방안**

